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5. 12 선고 2020가단30848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강원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A

피고 1. B

2. C

변론 종결 2020. 4. 28.

판결 선고 2020. 5.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44,903,646원 및 그 중 43,064,073원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9. 5. 27. 접수 제116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18. 7. 2. 피고 B의 D은행 대출 당시 피고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가, 2019. 6. 18. D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발생 통지를 받게 됨에 따라 2019. 9. 23. 피고 B의 대출금 잔액 43,064,0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대위변제금 외에 가지급금, 추가보증료 및 손해금을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위 보증사고발생 통지 직전인 2019. 5. 27.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는바,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 B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졌으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별소로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구상금 등의 채무자인 피고 B이 2019. 7. 11. 춘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9. 9. 10. 파산선고를 받았고, 신고된 파산채권자 중 1인인 원고 역시 2019. 9. 17.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2020. 2. 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구상금채권은 신고된 파산채권이다), 이러한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원고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피고 B을 상대로 별소로써 위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이는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등 참조). 결국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의 수익자라는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완수

별지